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102185 판결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피고E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5. 1. 23.

판결 선고2015.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362,0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는 2012. 8. 16. G와 사이에 G이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8. 16.부터 2014. 7. 30.까지 F의 부사장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매출의 30%를 피고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는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G이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음식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계약 약정서

제1조 갑과 을은 갑의 음식점을 통한 매출증대와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갑의 소유음식장에 을은 부사장 직위로 2012년 8월 16.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근무하면서 수익을 높인다.

제3조 갑의 소유음식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의 30% 금액과 총 세금(세무서, 구청, 시청 고지서 발급)을 갑이 최우선적으로 소유한다.

제4조 을은 근무기간 동안 총 매출의 70%(총세금을 포함) 금액 소유하고, 소유한 금액에서 모든 재료비, 공과금 모두, 직원급여(일용직 포함)와 갑과 을의 모든 세금을 지출한다.

제5조 을의 책임과 의무

(1) 갑의 음식점의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을은 최선을 다한다.

(2) 을이 소유한 금액(총매출 70% - 모든 세금)에서 모든 재료비(육류, 수산물, 공산품, 주류, 음료수, 과일 채소류 등), 예식과 피로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과 소품들, 피고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모든 공과금 및 세무서, 구청, 시청에서 청구하는 모든 세금과 현재 상호 F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을의 소유로 한다.

(3) 을은 갑의 예식장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소득이 예상되어 근무기간(2012. 8. 16. - 2014. 7. 30.)을 시작하기 전 300,000,000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을이 갑에게 지불한 300,000,000원은 소멸식이므로 갑은 을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을은 근무기간 종료 및 중지시 갑에게 300,000,000원의 반환요구를 절대 할 수 없다.

(4) 갑의 예식장 내에서 을의 자금활용을 위하여 제3자에게 미용실, 드레스실 하청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을 경우 을의 개인 채무이며 을이 반환해야 한다. 갑이 일체의 책임이 없다. 을의 부사장직 종료와 함께 미용실, 드레스실을 하청받은 사람은 조건 없이 즉시 장소를 비워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이로 인한 갑의 경제적 피해는 을이 부담한다.

(5) 갑의 예식장에서 영업행위, 예식장 건물 관리 및 사고 등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또한 사고시 을이 즉시 책임진다. 갑은 예식장 영업행위 및 관리, 사고 등에 일체의 책임이 없음은 물론, 을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갑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

제6조 을의 권리(근무기간 동안)

(1) 갑의 소유 예식장에서 예식장 영업 및 관리, 건물 관리를 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을은 갖는다.

(2) 영업 및 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업계획, 직원관리, 건물관리를 을이 스스로 결정해 진행한다.

나. 원고들은 2012. 8. 23. G과 사이에 원고들이 G에게 보증금 300,000,000원을 예치(계약만료시 정산 후 반환)한 후 2012. 8. 23.부터 2014. 8. 22.까지 F 예식장에서 미용·드레스 영업을 하고 G으로부터 미용·드레스 용역대금을 정산받기로 하는 내용의 미용·드레스 계약(이하 '이 사건 미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에게 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G은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3. 8.경까지 F에서 예식장 영업을 하였고, 이후부터는 피고가 다시 F에서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G은 F의 대표 및 사장으로서 이 사건 미용계약을 체결하여 당시 피고를 대표하는 외관이 존재하였고, 피고는 G으로 하여금 피고의 대표 및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원고들은 당시 G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용계약은 상법 제395조에 따라 피고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미용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용계약의 예치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G와 F의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6.부터 2014. 7. 30.까지 G에게 F의 운영권을 위임하였는바, F에 관한 운영권 위임의 실질은 피고가 G에게 상법 제10조의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이 사건 미용계약 체결 당시 G에게는 F에 관한 영업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었다.

설령 위 운영권 위임을 지배인으로서의 영업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G은 피고로부터 음식점 영업에 한하여 운영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상법 제15조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해당하여, 당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미용계약을 체결할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미용계약의 효력은 G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피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미용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예치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G으로 하여금 F의 상호를 사용하여 음식점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이 사건 미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미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예치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예치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설령 이 사건 미용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G에 대하여 이 사건 미용계약 종료에 따라 예치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G은 피고와의 F 운영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G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고 피고에 대하여 위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G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마. 원고들이 F에서 2013. 8.부터 2014. 3. 23.까지 미용·드레스 영업을 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 채권이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62,060,000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정산금 62,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3. 8. 3.	1,400,000	2013. 11. 10.	1,850,000
2013. 8. 4.	700,000	2013. 11. 16.	1,970,000
2013. 8. 10.	700,000	2013. 11. 23.	1,610,000
2013. 8. 11.	1,200,000	2013. 11. 24.	2,600,000
2013. 8. 24.	700,000	2013. 11. 30.	1,700,000
2013. 8. 25.	1,300,000	2013. 12. 1.	1,000,000
2013. 8. 31.	1,000,000	2013. 12. 7.	600,000
2013. 9. 1.	200,000	2013. 12. 8.	1,300,000
2013. 9. 7.	1,150,000	2013. 12. 14.	1,200,000
2013. 9. 22.	1,590,000	2013. 12. 15.	700,000
2013. 9. 28.	1,200,000	2013. 12. 21.	740,000
2013. 10. 5.	1,300,000	카드결제	190,000
2013. 10. 6.	2,600,000	2014. 1. 19.	1,300,000
2013. 10. 12.	1,200,000	2013. 2. 9.	2,000,000
2013. 10. 13.	2,450,000	2013. 2. 16.	600,000
2013. 10. 19.	4,900,000	2013. 2. 22.	1,940,000
2013. 10. 20.	2,970,000	2013. 3. 1.	1,060,000
2013. 10. 26.	2,100,000	2013. 3. 8.	200,000
2013. 10. 27.	900,000	2013. 3. 9.	200,000
2013. 11. 2.	3,340,000	2013. 3. 15.	1,360,000
2013. 11. 3.	2,600,000	2013. 3. 23.	840,000
2013. 11. 9.	1,600,000	합계	62,060,000

3. 판단

가.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8. 16. G과 이 사건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G으로 하여금 F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도록 허락하였고, 그에 따라 G은 F의 대표로서 F을 운영한 사실, G은 이 사건 미용계약서의 당사자란에 'F G'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G은 이 사건 미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장 상호에 불과한 F의 대표자로 본인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바 없으므로, G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G이 피고의 지배인 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수여받은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2012. 8. 16. G과 사이에 G이 2012. 8. 16.부터 2014. 7. 30.까지 F의 부사장으로서 예식장을 관리·운영하고 매출의 30%는 피고가, 나머지 매출 중 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G이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운영약정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와 G은 이 사건 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용·드레스실 하청 보증금반환책임 및 F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을 G이 부담하기로 정하였고, 2012. 8. 21.에는 G이 F을 운영하는 동안 거래처와 하청업체들로부터 일체의 돈을 받지 않겠으며 이를 어길 경우 금원반환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을 제10호증), 그에 따라 G 및 피고의 거래처들은 2013. 7.경 G의 영업기간 동안의 미수금채권은 피고와 무관하고 G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점(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G과 이 사건 운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G에게 F 영업에 관한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위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명의대여책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G과 F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 하여금 F을 운영하도록 한 사실, 그에 따라 G은 F의 상호를 이용하여 그 대표자로서 원고들과 이 사건 미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미용계약서에는 피고를 F의 영업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G은 이 사건 미용계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이 사건 미용계약에 따른 예치금반환의무나 G의 F 운영기간 동안에 발생한 F의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채무는 모두 G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이 법정에서는 보증금반환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증언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 사건 미용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F의 사업자가 피고임을 알렸다는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미용계약 체결 당시 G이 아닌 피고를 F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G을 대위한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G과 이 사건 미용계약을 체결하고 예치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미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G이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G과 피고는 이 사건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G이 지급한 300,000,000원에 대하여 G의 영업이 종료함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G은 피고에 대하여 3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G이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미수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2013. 8.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미용·드레스 용역정산금이 합계 62,06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용역대금 정산금이 10,400,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정산금 1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4. 6.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정숙

판사홍은기

판사김세준